

극적 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개혁의 연장선에서 시대 상황에 알맞는 새로운 관리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2. 政策의 變化

정부는 정부수립 초기 부족한 재정수입충당과 5.16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1975년도까지 국·공유지의 매각을 확대해왔으나 국·공유재산을 처분 위주로 관리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이 계속 감소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조세수입으로 재정조달이 가능해져 국·공유재산 관리를 처분정책에서 유지·보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1975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입하였고 1977년에 국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입하여 국·공유지의 매각을 가능한 제한하고 보존하는데 주력하였다.

국가가 198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등 무주부동산을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권리보전조치를 한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기누락재산 또는 무단점·사용재산의 발굴과 불법 형질변경, 전대, 목적외 사용재산등을 찾아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용을 근절하는 노력을 펴왔다.

1994년도에는 국유지 공급증대, 국유지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증대 등 적극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관리특별회

계」를 신설하고 「국유지개발신탁제도」를 도입한바 있으며 1999년도에는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사전적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공유재산의 활용기능을 확대하여 「공유지신탁제도와 대물변제의 허용 및 도시재개발 사업구역내 공유재산의 대부·매각에 대한 특례 허용」등 정책적 대변화를 가져왔다.

3. 財産의 範圍

1950. 4. 8 제정된 국유재산법과 1963. 11. 11 제정된 지방재정법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개정되어 국·공유재산의 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에서 국유재산이나 지방재정법 제72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은 그 범위가 같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을 말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결국 소유주체에 따라 다를뿐 개념적 정의는 같다 하겠다.

이러한 국·공유재산을 내용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